

법원 공보

2025. 09. 15.
제 1720 호



법원행정처

목차

• 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1101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0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109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111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113
•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115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1117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122
• 예규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133
• 신법령 목록		1135
• 인사		1138

■ 규칙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23호 2025. 9. 1. 공포)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1호	가목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나목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다목	10호봉 이상의 법관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라목	9호봉 이하의 법관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법원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제2호	가목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법원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5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나목	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법원장은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71)	102
	라	60	실비(상한액: 216)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행정처차장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215)	87
	라	50	실비(상한액: 161)	73
3. 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사법정책연구원장·법원행정처차장을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108)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7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법원장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 ·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 ·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 ·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법원행정처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예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 정 안

〈삭 제〉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24호 2025. 9. 1. 공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회계별/ 기급별 기관별		회계직명		수입 징수관	동대리자	분임 수입 징수관	동대리자	재무관	동대리자	분임 재무관	동대리자	지출관	동대리자	분임 지출관	동대리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반 회계 / 사법서 비스진 흥기금	행정관 리실장 (법원시 설 확충 관련 사항 제 외)	사법등 기국장		기획총괄 심의관 (법원시 설 확충 관련 사항)	기획조정 심의관	행정관 리실장 (법원시 설 확충 관련 사 항 제외)	사법등 기국장 (다만 사 법등기 국장부 채시 재 판사무 국장)	기획총괄 심의관 (법원시 설 확충 관련사 항)	기획조정 심의관	재무 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 법원의 선 임법원서 기관		
사법연수원		"	사무 국장	연수 과장				사무 국장	연수 과장			총무 과장	"		
사법정책 연구원		"	사무 국장	연구지 원과장				사무 국장	연구지 원과장			"	"		
법원공무원 교육원		"	사무 국장	교무 과장				사무 국장	교무 과장			"	"		
법원도서관		"	사무 국장	편찬 과장				사무 국장	편찬 과장			"	재무관이 아닌 소속 선임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사무 국장	지출관 이 아닌 소속법 원의 선 임법원 서기관 (다만, 서울중 양지방 법원의 경우에 는 선임 법원부 이사관)				사무 국장 (다만, 고등법 원지방 부의 경 우에는 그 지방 부가 소 재한 지 방법원 의 사무 국장)	지출관 이 아닌 소속법 원의 선 임법원 서기관 (다만, 서울중 양지방 법원의 경우에 는 선임 법원부 이사관)			총무 과장 (다만, 고등법 원지방 부의 경 우에는 그 지방 부가 소 재한 지 방법원 의 총무 과장)	재무관이 아닌 소속 법원의 선 임법원서 기관		
지원	사무국 설치지원	"			사무 국장	지출관이 아닌 소 속 지원 의 선임 자				사무 국장	지출관이 아닌 소 속 지원 의 선임 자			총무 과장	재무관이 아닌 소 속 지원 의 선임 자
	사무과 설치지원	"				지원장	선임법관			지원장	선임 법관			사무 과장	"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26호 2025. 9. 1. 공포)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개 정 안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正本·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27호 2025. 9. 1. 공포)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 12. (생 략)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개 정 안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 내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85호 2025. 8. 26.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귀국보고 등)”을“(결과보고 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주일”을 “4주일”로 한다.

제26조 중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을 “제1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주일”을 “4주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1조(귀국보고 등) ① 국제회의 참석자 및 직무상 해외출장자는 귀국일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회의 참석자 및 직무상 해외출장자는 귀국일부터 2주일 이내에 국제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또는 직무상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생략)

제26조(준용규정) 제14조의2,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제화연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연수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제화연수자는 귀국일부터 2주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제25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략)

개 정 안

제21조(결과보고 등) <삭제>

② -----
----- 4주일 -----

-----.

③ · ④(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규정) -----
-----, 제19조의 규정은 -----
-----.

제27조(연수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
----- 4주일 -----

-----.

②(현행과 같음)

◎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86호 2025. 8. 28. 결재)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의4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4호의4 서식]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 부서/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20 . . . (기관의 장) 인			

◇ 유의 사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1호의2 서식]

(앞면)

우 /주소 : /전화()/팩스()/담당 부서/담당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자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 . . (기관의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면)

※ 유의 사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제5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르고,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87호 2025. 8. 28. 결재)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

1. 대법원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대 법 원	Supreme Court
대 법 원 장	Chief Justice
대 법 관	Justice
대 법 관 회 의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대 법 원 장 비 서 실	Office of the Chief Justice
대 법 원 장 비 서 실 장	Chief Secretary to the Chief Justice
대 법 원 장 비 서 관	Secretary to the Chief Justice
수 석 재 판 연 구 관	Presiding Judge, Head of Research Division
선 임 재 판 연 구 관	Presiding Judge, Deputy Head of Research Division
재 판 연 구 관 (법 관)	Judge, Research Division
재 판 연 구 관 (비 법 관)	Judicial Researcher
윤 리 감 사 관	Insp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윤 리 감 사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윤 리 감 사 제 1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1
윤 리 감 사 제 2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2
윤 리 감 사 제 1 담 당 관	Director for Judicial Ethics and Inspection 1

2. 각급 법원 등

국문 명칭	영문 명칭
고 등 법 원	High Court

국문 명칭	영문 명칭
특 허 법 원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지 방 법 원	District Court
서 울 행 정 법 원	Seoul Administrative Court
가 정 법 원	Family Court
회 생 법 원	Bankruptcy Court
지 원	Branch Court
가정지원	Family Branch Court
시 · 군 법 원	Municipal Court
법 원 장	Chief Judge
등 기 소	Registration Office
등 기 소 장	Director of Registration Office

3. 재판부 및 사무국 등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민 사 1 부	Civil Chamber 1
형 사 1 부	Criminal Chamber 1
행 정 1 부	Administrative Chamber 1
가 사 1 부	Family Chamber 1
파 산 1 부	Bankruptcy Chamber 1
원 외 재 판 부	Satellite Court of High Courts
재 정 합 의 부	Judicial Panel for Referred Cases
조 정 재 판 부	Mediation Chamber
수 석 부 장 판 사	Chief Presiding Judge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부 장 판 사	Presiding Judge
고 등 법 원 판 사	High Court Judge
단 독 판 사	Single Judge
배 석 판 사	Associate Judge
판 사	Judge
공 보 관	Judge,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사 법 행 정 지 원 법 관	Judge for Judicial Administration
재 판 연 구 원	Law Clerk
참 여 관	Clerk of Court
참 여 보 조 주 무 관	Assistant Clerk of Court
속 기 사	Court Reporter
법 정 경 위	Court Security Officer
양 형 조 사 관	Sentencing Investigation Officer
가 사 조 사 관	Family Court Investigation Officer
증 인 지 원 관	Witness Support Officer
사 무 국	Administration Bureau
사 무 국 장	Director General of Administration Bureau
민 사 국	Civil Affairs Bureau
형 사 국	Criminal Affairs Bureau
등 기 국	Registration Bureau
총 무 과	General Affairs Division
총 무 과 장	Director of General Affairs Division
관 리 과	Maintenance Division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민	사	과	Civil Affairs Division
형	사	과	Criminal Affairs Division
특	히	과	IP Division
감	사	과	Audit Division
민	형	과	Civil & Criminal Affairs Division
행	정	과	Administrative Affairs Division
시	설	과	Facilities Division
가	사	과	Family Affairs Division
후	견	과	Guardianship Division
조	사	과	Investigation Division
가 족 관 계 등 록 과			Family Registration Division
민	사	신 청 과	Civil Application Division
민	사	집 행 과	Civil Execution Division
민	사	항 소 과	Civil Appellate Division
민	사	합 의 과	Civil Division (Three-Judge Panel)
민	사	단 독 과	Civil Division (Single Judge)
민	사	소 액 과	Small Claims Division
기	록	관 리 과	Records Management Division
형	사	항 소 과	Criminal Appellate Division
형	사	합 의 과	Criminal Division (Three-Judge Panel)
형	사	단 독 과	Criminal Division (Single Judge)
파	산	과	Bankruptcy Division
개	인	회 생 과	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Division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중 합 접 수 과	Document Filing Division
중 합 민 원 실	Public Service Office
공 탁 소	Court Deposit Office
공 탁 관	Court Deposit Officer
등 기 과	Registration Division
등 기 운 영 과	Registration Management Division
부 동 산 등 기 조 사 과	Real Estate Registration Examination Division
법 인 등 기 조 사 과	Corporation Registration Examination Division
등 기 관	Registration Officer
법 원 보 안 관 리 대	Court Security Unit
가 정 법 원 중 합 지 원 센 터	Family Court Public Service Center

4. 대법원의 기관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법 원 행 정 처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법 원 행 정 처 장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법 원 행 정 처 차 장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기 획 조 정 실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기 획 조 정 실 장	Chief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기 획 총 팔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기 획 조 정 심 의 관	Director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기 획 담 당 관	Director for Planning
기 획 운 영 담 당 관	Director for Planning and Management

국문 명칭	영문 명칭
법 무 담 당 관	Director for Legal Affairs
국 제 심 의 관	Director for International Affairs
조 직 심 의 관	Director for Organization Management
예 산 담 당 관	Director for Budget
시 설 담 당 관	Director for Facility Planning
기 술 담 당 관	Director for Facility Management
사 법 지 원 실	Judicial Procedure Office
사 법 지 원 실 장	Chief of Judicial Procedure Office
사 법 지 원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Judicial Procedure
민 사 지 원 제 1 심 의 관	Director for Civil Division 1
민 사 지 원 제 2 심 의 관	Director for Civil Division 2
형 사 지 원 심 의 관	Director for Criminal Division
특 별 지 원 심 의 관	Director for Special Division
사 법 정 책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Policy
법 정 통 역 센 터	Court Interpretation Center
사 법 정 보 화 실	Judicial IT Office
사 법 정 보 화 실 장	Chief of Judicial IT Office
사 법 정 보 화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Judicial IT
사 법 전 산 운 영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System Management
정 보 화 기 획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and Planning
정 보 화 심 의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관 리 운 영 담 당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Facility Management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정 보 화 운 영 담 당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Management
정 보 화 지 원 담 당 관	Director for Judicial IT Support
정 보 보 호 담 당 관	Director for Information Protection
법 원 기 록 보 존 소	Judicial Archives Center
행 정 관 리 실	Administrative Management Office
행 정 관 리 실 장	Chief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Office
인 사 협 력 심 의 관	Director for Personnel Management Coordination
총 무 담 당 관	Director for General Affairs
재 무 담 당 관	Director for Finance
복 지 후 생 담 당 관	Director for Welfare Benefits
대 법 원 청 사 건 강 센 터	Supreme Court Health Center
사 법 등 기 국	Registration Bureau
사 법 등 기 국 장	Chief of Registration Bureau
사 법 등 기 심 의 관	Director for Registration
등 기 기 록 정 비 사 업 소	Registration Record Maintenance Office
가 족 관 계 등 록 과 장	Director for Family Registration
부 동 산 등 기 과 장	Directo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정 보 시 스템 운 영 과 장	Director for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Director of Family Register Office for Overseas Koreans
대 법 원 등 기 정 보 센 터	Supreme Court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
재 판 사 무 국	Supreme Court Litigation Bureau
재 판 사 무 국 장	Chief of Supreme Court Litigation Bureau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총 합 민 원 과 장	Director for Court Affairs
판결서 비실명화 및 전자소송사건 스캔 업무 지원 사업 소	Office of Judgment Anonymization and Scan Service for E-litigation
민 사 과 장	Director for Civil Litigation
형 사 과 장	Director for Criminal Litigation
인 사 총 괄 심 의 관	Director General for Personnel Affairs
인 사 심 의 관	Director for Personnel Affairs
인 사 운 영 심 의 관	Director for Personnel Management
공 보 관	Director General for Public Relations
홍 보 기 획 관	Director for Public Relations and Planning
안 전 관 리 관	Director General for Security Management
대 법 원 보 안 관 리 대	Supreme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
사 법 연 수 원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JRTI)
사 법 연 수 원 장	President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Vice President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연 수 원 수 석 교 수	Chief Professor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사 법 연 수 원 교 수	Professor of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연 수 과	Training Department
국 제 사 법 협 력 센 터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Center
사 법 정 책 연 구 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장	President of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수 석 연 구 위 원	Chief Research Fellow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선 임 연 구 위 원	Senior Research Fellow (Presiding Judge)
연 구 위 원 (법 관)	Research Fellow (Judge)
연 구 위 원 (비 법 관)	Research Fellow
연 구 심 의 관	Director of Research
연 구 담 당 관	Research Officer
연 구 지 원 과	Research Support Division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President of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교 수	Professor of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교 무 과	Academic Affairs Division
법 원 도 서 관	Supreme Court Library
법 원 도 서 관 장	President of Supreme Court Library
조 사 심 의 관	Director of Judicial Research
자 료 편 찬 과	Publishing and Editing Division
자 료 기 획 과	Acquisition and Technical Processing Division
지 식 운 영 과	Knowledge Management and Services Division
양 형 위 원 회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위 원 장	Chairperson of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상 임 위 원	Standing Commissioner of Sentencing Commission
양 형 위 원 회 운 영 지 원 단 장	Secretary-General of Sentencing Commission
기 획 운 영 과	Planning and General Affairs Division

국문 명칭	영문 명칭
통 계 분 석 과	Statistical Analysis Division
자 료 조 사 과	Data Investigation Division
양 형 자 료 분 석 관	Sentencing Data Analyst

■ 예규

◎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45호 2025. 8. 28. 결재)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자격 및 선정)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보직기간)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②(생 략)

개 정 안

제2조(자격 및 선정) ① -----

-----.

②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보직기간)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25. 8. 16. ~ 2025. 8. 31.)

법률

법률제2102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21064	2025. 08. 26.	4
법률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1032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1033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21034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0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103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10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103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103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104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 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042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	"	4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70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59	2025. 08. 19.	3
대통령령제35710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3571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571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64	2025. 08. 26.	56
대통령령제35713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57
대통령령제357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58
대통령령제3571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9
대통령령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0
대통령령제35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6
대통령령제35718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0
대통령령제35719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2
대통령령제3572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572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067	2025. 08. 29.	4
대통령령제3572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5

총리령

총리령제204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7	2025. 08. 29.	6
-----------	-------------------------------	-------	---------------	---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4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58	2025. 08. 18.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3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5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해양수산부령제70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9
행정안전부령제574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외교부령제14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59	2025. 08. 19.	7
통일부령제13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1	2025. 08. 21.	3
해양수산부령제75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732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062	2025. 08. 22.	4
국가보훈부령제5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3	2025. 08. 25.	3
고용노동부령제44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4	2025. 08. 26.	77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9
행정안전부령제57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0
문화체육관광부령제60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6	2025. 08. 28.	4
환경부령제11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067	2025. 08. 29.	8

인사

》 인사발령 법 제126호 | 2025. 8. 4.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민식	2025. 8. 8.부터 2026. 8. 7.까지 미국 U CLA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오형석	2025. 8. 8.부터 2026. 8. 7.까지 스페인 마드리드국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승엽	2025. 8. 8.부터 2026. 8. 7.까지 미국 듀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한지윤	2025. 8. 18.부터 2026. 8. 17.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27호 | 2025. 8. 4.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취소			
인사발령 법 제122호(2025. 7. 24.자) 중 1. 사법연구란의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 사 김성원 2025. 8. 13.부터 2025. 8.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28호 | 2025. 8. 1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동관	2025. 8. 18.부터 2026. 2. 17.까지 사법 연구를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29호 | 2025. 8. 1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학위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 송	2025. 9. 1.부터 2026. 8. 31.까지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2025. 9. 25.부터 2026. 8. 31.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3.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수진	2025. 8. 18.부터 2026. 6. 17.까지 미국 UC Law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지원	2025. 8. 18.부터 2026. 6. 17.까지 미국 시카고켄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30호 | 2025. 8.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취소			
가. 인사발령 법 제2호(2021. 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9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나. 인사발령 법 제173호(2022. 11.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10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다. 인사발령 법 제181호(2022. 1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인사발령 법 제102호(2023.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13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마.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아.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배온실 10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바.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아.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8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사.	인사발령 법 제120호(2024. 7.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정 13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아.	인사발령 법 제135호(2024. 8.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숙희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자.	인사발령 법 제171호(2024. 11.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12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차.	인사발령 법 제187호(2024. 1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9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카.	인사발령 법 제50호(2025.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14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타.	인사발령 법 제94호(2025.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취소함		

2. 발령정정

- 가. 인사발령 법 제117호(2020. 8. 24.자) 중 4. 복직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의 “8호봉을 급함.”을 “9호봉을 급함.”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 나. 인사발령 법 제106호(2022.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 다. 인사발령 법 제106호(2022.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숙희 10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 라. 인사발령 법 제6호(2023. 2. 18.자) 중 2. 복직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영의 “12호봉을 급함.”을 “13호봉을 급함.”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마.	인사발령 법 제151호(2023. 9.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배온실 10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바.	인사발령 법 제173호(2023. 11. 26.자) 중 2. 복직란의 가.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의 “7호봉을 급함.”을 “8호봉을 급함.”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사.	인사발령 법 제201호(2024. 1.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정 13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아.	인사발령 법 제10호(2024. 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류지미 8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자.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윤혜정 12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차.	인사발령 법 제57호(2024. 3.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숙희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카.	인사발령 법 제93호(2024. 5.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14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타.	인사발령 법 제109호(2024.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지현 9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파.	인사발령 법 제151호(2024. 9.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백주연 12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하.	인사발령 법 제187호(2024. 1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유정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거.	인사발령 법 제10호(2025. 2.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영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너.	인사발령 법 제64호(2025. 4.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라.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나라 8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더.	인사발령 법 제94호(2025. 6.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온실 11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러.	인사발령 법 제109호(2025. 7. 1.자) 중 1. 정기승급란의 “마.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귀연 10호봉을 급함”을 동일자로 추가함		
머.	인사발령 법 제118호(2025. 8. 22.자) 중 4. 복직란의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순현의 “8호봉을 급함.”을 “9호봉을 급함.”으로 동일자로 정정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31호 | 2025. 8.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성	2025. 8. 21.부터 2025. 8.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노동재판 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정회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수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국식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이민형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여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세영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조현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가현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2025. 8. 21.부터 2025. 8.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노동재판 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혜	"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의석	"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상민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
	"	류희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철홍	2025. 8. 21.부터 2025. 8.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노동재판 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라.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철민	2025. 8. 21.부터 2025. 8.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노동재판 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강호	"
	광주고등법원 판사	하지인	"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선종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현구	2025. 8. 21.부터 2025. 8.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노동재판 실무 연구 I (장기연구과정)) 피교육을 명함
	"	함현지	"
	서울행정법원 판사	유경민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인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
	춘천지방법원 판사	박혜련	"
	"	정혜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신일성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심현우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지선경	"
	부산지방법원 판사	박정미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	남승우	"
	"	홍대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변이섭	"
			끝.

》 인사발령 법 제132호 | 2025. 8.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윤현규	2025. 8. 25.부터 2025. 8. 28.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1)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흥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도영오	"
	"	이준범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정진우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택성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준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호	"
	대전지방법원·대인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흥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수	"
	"	김정운	"
	"	유성현	"
	"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남효정	"
	"	박혜정	"
	"	정승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이학승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효연	"
	"	신서원	"
	"	정왕현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공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국인	2025. 8. 25.부터 2025. 8. 28.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1)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신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정치훈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신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영복	2025. 8. 25.부터 2025. 8. 28.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1) 피교육을 명함
"	윤권원	"
"	이동현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미	2025. 8. 25.부터 2025. 8. 28.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1) 피교육을 명함
"	김수정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남승민	2025. 8. 25.부터 2025. 8. 28.까지 법관 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1)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한동	"
"	이영림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정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명환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

끝.

》 인사발령 법 제133호 | 2025. 8. 1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영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2025. 9. 1. 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흥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소망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6. 2. 12.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진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6. 2. 22.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송현섭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6.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5.부터
2025. 9. 24.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장지웅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1.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강태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5. 10. 31.까지 휴직을 명함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지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8.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2025. 9. 11.부터 2026. 5.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朴志原)	2025. 9. 1.부터 2026. 5.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영희	2025. 9. 1.부터 2026. 1. 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2025. 9. 9.부터 2025. 12. 1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5. 9. 20.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20.부터 2026. 2. 11.까지 휴직을 명함

”

하효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5. 9. 23.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희성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9. 19.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9.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다연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20. 자)
"	김주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20. 자)
"	임효빈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5.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5.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진경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1.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박지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27.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효정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보함 (2025. 9. 20.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신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9. 1.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초하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5. 9. 1. 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6. 2. 22.까지 1주간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효정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2025. 9. 1.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1.부터 2025. 9.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기호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5. 9. 1. 자)
	대전가정법원 판사	송승훈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2025. 9. 25.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유경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8. 28. 자)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8. 28.부터 2026. 2. 22.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혜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5. 9. 1. 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황미정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9. 9. 자)

4.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은혜	2025. 9. 1.부터 2026. 8. 31.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 파견근무를 명함
-----------	-----	---

5. 복 귀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박진욱	복귀를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포함
---	-----	---

(2025. 9.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34호 | 2025. 8.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17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성진	16호봉을 급함
	"	정영훈	"
	"	최종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강동원	"
	"	이규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연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영호	"
	"	오병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장	김경훈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욱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곽경평	15호봉을 급함
	"	이춘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
	"	황보승혁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양우창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창민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구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기용	14호봉을 급함
	"	서희경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준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박대산	14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12호봉을 급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휘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
	"	김택성	"
	"	심현근	"
	"	유성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명선아	"
	"	장현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현준	"
	"	박현진	"
	"	송명주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김종헌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
	"	설승원	"
	"	신일수	"
	"	윤지숙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익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양시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보형	"
	"	조영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장영채	"
	"	전진우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우혁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우인선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안경록	12호봉을 급함
	"	이종민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표현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은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박영수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이승운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장판사)	박현숙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최연미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배예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황인준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준	"
	"	반효림	"
	"	이효신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윤	"
	"	박원철	"
	"	임수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주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주관	"
	"	백광균	"
	"	이진재	"
	"	주진오	"
	"	차승우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주	"
	"	이광열	"
	"	이대로	"
	"	이연진	"
	"	임정윤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미옥	12호봉을 급함
	"	정인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엽	"
	"	김주미	"
	"	박미선	"
	"	신동호	"
	"	이현주	"
	"	정신구	"
	"	최윤정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민병국	"
	"	이경민	"
	"	정치훈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세용	"
	"	김영석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김희진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차동경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균	"
	"	박희정	"
	"	이미주	"
	"	최유신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연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가현	"
	"	박영기	"
	"	유철희	"
	"	정승연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형	"
	"	김유정	"
	"	이동진	"
	"	이유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지창구	12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란주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주리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정민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16호봉을 급함
"	박정운	15호봉을 급함
"	이예슬	"
"	송영복	12호봉을 급함
"	유제민	"
"	이인수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은경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동준	"
부산고등법원 판사	정현수	"
"	조지희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영재	"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12호봉을 급함
-----------	-----	----------

마.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남명수	8호봉을 급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민아	"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이승일	12호봉을 급함
--------------------------------	-----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진수	12호봉을 급함
	"	황윤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조영진	"
	광주가정법원 판사	김동관	"
	전주지방법원 판사	강동극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준희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노을	9호봉을 급함
	"	서동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민정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보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주재오	"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주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민정	8호봉을 급함
	"	김연수 (金衍守)	"
	"	김혜령	"
	"	이재규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용욱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홍유정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	김현준	"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나리	"
	"	장성신	"
	"	조현준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노형미	"
	"	박관형	"
	"	양민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주연	8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육영아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 송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연주	"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건훈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
	창원지방법원 판사	유원주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현	6호봉을 급함
	"	백승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창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병인	"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주원	"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정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수	5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보운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유은지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태욱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선호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정환	"

(2025. 9.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35호 | 2025. 8.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 명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용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를 지명함
2.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승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2025. 8. 24.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36호 | 2025. 8.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2025. 9. 3.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2025. 9. 29.부터 2025. 10.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임대호	2025. 9. 8.부터 2025. 10. 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장준현	2025. 9. 22.부터 2025. 10.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규훈	2025. 9. 3.부터 2025. 9.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헌	2025. 9. 2.부터 2025. 9.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2025. 9. 3.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신명희	2025. 9. 1.부터 2025. 9.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장용범	2025. 9. 5.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영	2025. 9. 5.부터 2025. 10. 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2025. 9. 5.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경희	2025. 9. 29.부터 2025. 10.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2025. 9. 5.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2025. 9. 3.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박현수	2025. 9. 5.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남해광	2025. 9. 2.부터 2025. 9.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언주	2025. 9. 5.부터 2025. 10. 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준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정훈	2025. 9. 27.부터 2025. 10.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37호 | 2025. 8.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혜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5. 9. 1.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5. 8. 29. 자) 끝.			

》인사발령 법 제138호 | 2025. 8. 2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섭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주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진우	"
	"	김병만	"
	"	박은진	"
	"	성인혜	"
	"	이현정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양시호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공성봉	"
	"	전진우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부장판사)	태지영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김민철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연	"
	"	김미진	"
	"	진정화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미호	"
	"	조아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재은	"
	"	박은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김미진	"
	"	조 실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희	"
	"	심학식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
	"	김주관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민	"
	"	임정윤	"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손혜정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수아	"
	"	김성진	"
	"	김세욱	"
	"	김주미	"
	"	최선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윤정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	한나라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이혜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영석	"
	"	이새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송현	"
	"	배은창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영기	"
	"	범선윤	"
	"	유철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이	"
	"	이동진	"
	"	이용희	"
	"	황지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심홍걸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기	"
	"	이인경	"
	"	전성준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	이봉민	"
	"	조 인	"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규도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영재	"
	"	김대권	"
	"	류희상	"
	"	신동주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경호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	정교형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신영	2025. 9. 1.부터 2025. 9. 4.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경력별 연수 Ⅲ-2) 피교육을 명함
"	김민지 (金旻志)	"
"	이승연	"
"	이유영	"
"	이희승	"
"	임상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효은	"
"	홍윤하	"
"	황여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진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지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조영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차호성	"

끝.



2025. 09. 15. 제 1720 호
Supreme Court of Korea



9 772951 225009
ISSN 2951-2255